

의안번호	2200913
의 퇴 인	이재강의원
회 답 일	2024.8.2.
추계번호	24D117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의무규정
2	안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홍보 방안 마련, 국민참여사업, 지역별 기반 조성, 남북교류에 관한 실적과 통계의 수집·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남북경제공동체 구현)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3	안 제10조(북한에 대한 지원)	
4	안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의 기반 조성)	

2. 상세 사유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 등의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의2)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 19 전후 현재까지 국경봉쇄 및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집행이 부진함
 -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어 합리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은 2,105억 9,700만원(기초 343억 6,100만원, 광역 1,762억 3,600만원, 2024.3.31. 기준)
 - 참고로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2024년 1조 5,841억원)에서 지원하는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2024년 계획액은 4,753억원(북한영유아 등 지원 871억원, 보건의료협력 994억원, 농축·산림·환경협력 2,877억원, 인도지원·협력체계 구축지원 11억원)
- 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 단계에서 지원대상, 지원방법, 규모 등에 대하여 알 수 없어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